

제 298 회 임시 회
2011. 03. 17.(목)

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심 사 보 고 서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 사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박문희 의원 외 6인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1년 3월 16일

○ 회부일자 : 2011년 3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2011년 3월 17일

○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,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출석일시 : 2011. 4. 12.(화) <1일간>
-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- 출석대상 : 충청북도지사와 「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·국·원장,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

3. 검토보고 요지 - 의회운영전문위원 조 병 옥

-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,
- 도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

7. 소수의견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“없음”

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- 출석일시 : 2011. 4. 12.(화) <1일간>
-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- 출석이유 :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
- 출석대상 :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·국·원장,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

관계 법령

□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

- 제73조(도지사 등의 출석요구)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, 출석요구를 받은 도지사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④도지사가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